

#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인터넷 청약 방법 안내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 ■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 (반드시 청약 전 미리 준비하세요!)

인터넷뱅킹 가입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후 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가입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

## ■ 인터넷 청약 접수 방법

- 인터넷 청약 신청

'청약Home'(한국감정원)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01\_ 청약통장 가입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07\_ 청약 신청하기

02\_ '청약 Home' 홈페이지 접속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08\_ 주택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03\_ 청약신청에서 APT 청약신청 선택  
(APT 특별공급 / 1순위·2순위 선택)

09\_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04\_ 주택 선택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10\_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05\_ 주민등록번호 입력

11\_ 청약신청 내역확인(전자서명)

06\_ 공인인증서 선택 비밀번호 입력

12\_ 청약완료

- ※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시간(08:00~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청약방법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전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가상으로 미리 체험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 추가 서비스

-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 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청약신청 ⇒ ② APT청약신청 ⇒ ③ 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④ 서비스 이용 동의 시

※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①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②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③ 세대구성원 동의 ⇒ ④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문의) 1688-3342

#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청약 조건 check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청약과열지역입니다.**

## 1순위 청약 조건 Check

### 1\_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 청약신청 가능

수도권 외 지역 청약신청 불가

(1) 수원시 거주 : ①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청약 접수

②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기타지역 청약 접수

(2) 수도권 거주 : 기타지역 청약 접수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 공급)

※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연속 90일, 연간 183일 초과)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타지역 청약 접수(당해지역 접수 시 부적격 처리) 또는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지역에서 마감되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는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_ 연령 확인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세대주 청약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청약신청 불가

### 3\_ 세대주 확인

세대주 : 1순위 가능

세대원 : 2순위 가능

### 4\_ 청약통장 기간 확인

24개월 이상 경과 : 1순위 가능

24개월 미만 경과 : 2순위 가능

### 5\_ 청약통장 예치금 확인

구분	수원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9, 75, 84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59, 75, 84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59, 75, 84, 105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59, 75, 84, 105, 189

※ 해당금액 미만 : 2순위 청약신청 가능

### 6\_ 5년내 당첨사실 확인

당첨사실 없음(세대원 포함) : 1순위 가능

당첨사실 있음(세대원 포함) : 2순위 가능

### 7\_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자 및 1주택자 : 1순위 가능

2주택 이상 : 2순위 가능

(1) 주택이 없다(무주택자) : 가점제 공급 대상자

(2) 주택이 있다(유주택자) : 추첨제 공급대상자 : ① 1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② 2주택 이상 1순위 청약 불가(2순위 가능)

※ 주택(일부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 소유 여부의 확인대상은 청약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2년내 가점제 당첨사실 여부 등 선정기준 선택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공급대상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 8\_ 재당첨제한 확인

• 아래 4가지 중

- 모두 '아니오'일 경우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신청 가능

- 하나라도 '예'일 경우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원의 청약 자격 제한 기간을 '청약홈'에서 확인 필요.

(1)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2)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3) 과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4) 과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 상기 (1)(2)(3)(4) 항목의 확인 대상은 청약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재당첨제한 내역 및 제한기간은 한국감정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문의) 1688-3342

# 일반공급(1·2순위) 청약 안내 [1]

## □ 일반공급(1·2순위) 신청일정

신청 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1순위 (해당지역)	2020.07.30(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1순위 (기타지역)	2020.07.31(금) 08:00~17:30		
2순위	2020.08.03(월) 08:00~17:30		

## □ 일반공급 청약 자격

구분	순위별 조건				
	거주지역	당첨사실 제한	재당첨 제한	주택소유	청약통장
1순위 (해당지역)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세대주만 청약 가능)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전국)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원 포함)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 (세대원 포함) ※ '청약홈' 청약제한사항확인	무주택자, 1주택자 가능 - 무주택자 : 가점제 - 1주택자 : 추첨제	청약통장 24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기타지역)	수원시 1년 미만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 (세대주만 청약 가능)				청약통장 24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도 청약 가능)	관계없음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세대원 포함) 2순위 청약 불가	관계없음	청약통장 가입되어 있는 분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제한은 3년)				
재당첨 제한	• '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예비당첨자	• 각 타입별 일반공급물량의 3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 (동일 점수 경쟁 시 추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간 해외 체류자 및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거나, 청약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여야 합니다.</li> <li>청약통장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li> <li>청약예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규모 변경 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li> <li>청약저축 → 청약예금 통장 변경 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li> </ol> </li> </ol> </li> </ul>				

## □ 민영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구분	수원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9, 75, 84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59, 75, 84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59, 75, 84, 105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59, 75, 84, 105, 189

# 일반공급(1·2순위) 청약 안내 [2]

## ■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 기준

구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규칙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됩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합니다.</li> </ul>

##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유주택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청약신청자 자신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제외)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특별공급 청약 안내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일정

신청 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b>2020.07.29(수)</b> (인터넷 신청 '청약Home': 08:00~17:30) (견본주택: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 견본주택 (※ 고려자, 장애인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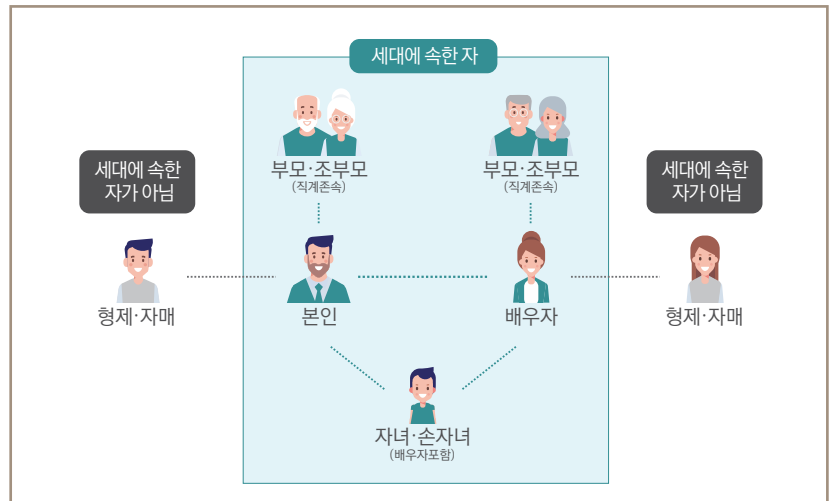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청약자격	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택소유	세대원 전원 무주택			
기본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청약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청약가능 면적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59, 75, 84		59, 75, 84, 105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청약통장 24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예비입주자	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전매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전매 제한</li> <li>- 소유권이전등기 시부터 전매제한 기간까지 1회에 한하여 전매 가능(해당 주택의 매수자는 전매제한 종료 시까지 전매 불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6.19. 수원시 투기과열지구 지정)</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동일한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신청(특공+특공)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 한정)</li> <li>•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li> <li>•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로 동일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 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합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li> <li>• 소형·저가주택등 1채 이상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li> <li>• 분양권등도 주택소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이 무주택
  - ※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해당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로 청약 가능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서 및 약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터넷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또는 계약 시 제출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3자 대리 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인터넷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만 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만 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세대원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 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청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  
 ※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선정방법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선정 방법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 120% 이하 (본인,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li> <li>•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 적용 (소수점 이하 절상)</li> </ul>
선정방법	<p>〈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각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른 우선공급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급세대수 75% 우선배분(소수점 이하 절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혼부부 우선공급 75% : 소득기준 100% 이하 (배우자 소득 有 120% 이하)</li> <li>2) 신혼부부 일반공급 25% : 소득기준 120% 이하 (배우자 소득 有 130% 이하)</li> </ol> </li> <li>2. 신혼부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li> <li>2)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li> <li>3)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거주기간 우선요건을 충족한 자(※ 수월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li> <li>나.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포함))</li> <li>다.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li> </ul> </li> </ol> </li> </ol>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 ~ 130% 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li> <li>•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li> <li>※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li> <li>※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li> <li>※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국민연금공단</li> </ul>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ul>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ul>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ul>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ul>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공단</li> <li>• 세무서</li> </ul>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li> <li>•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li>• 등기소</li> </ul>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li> <li>•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복지센터</li> </ul>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li>※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국민연금공단</li> </ul>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사업자 확인각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비치</li> </ul>	

※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

※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 1688-3342

#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안내문

##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나 입양아를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됨.
- 지역우선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시 수월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경기도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 되는 잔여 물량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경쟁시 수월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서 및 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터넷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또는 계약 시 제출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3자 대리 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인터넷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대리인 신청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  
 ※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경기남부보호지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 군인(경기남부보호지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하나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 (기관 추천) 특별 공급	○		특별공급 신청서 및 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터넷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또는 계약 시 제출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3자 대리 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인터넷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하여 발급)
대리인 신청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  
※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 직계존속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도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만 60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는 미적용됨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함.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도 동일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수원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우선)
    - ②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서 및 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터넷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또는 계약 시 제출 건분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3자 대리 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인터넷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건분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하여 발급)
	○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	출입국사실증명원	자녀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대리인 신청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  
 ※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